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공기관 명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평가기관		대진정보통신(주)	평가기간	2025.09.22. ~ 2025.11.07.	평가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대상시스템개요	시스템명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5.06.05. ~ 2026.01.01.
	추진개요 및 목적	○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자동화된 하·귀선심사 인프라 구축 ○ 크루즈 자동심사대 구축 및 설치로 크루즈 심사장 혼잡도 개선 ○ 심사 시간 단축으로 크루즈 이용객 장시간 대기 등 불편 해소				
	추진성격	대상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제35조제3호, 제35조제4호		추진예산	5,045,559,390원 (VAT포함)
		추진주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관리과			
		추진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입국심사)		추진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신기술 적용 없음			
	주요내용	○ 크루즈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38대: 제주항(10), 서귀포(28)) - 신규 증설 자동심사대 통합관제시스템 확대 반영 - CCTV 및 영상녹화장비용 방화벽 설치 등 보안강화 - 안내 콘텐츠 및 홍보용 동영상 제작 등 이용편의성 확보 ○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바이오 검색서버 증설 - 크루즈 자동심사대 전용 바이오 검색서버(FBIS 내 증설) 구축 (분배서버: 1대, 검색서버: 2대) - FBIS 바이오 규제자 정보, 하선자 정보 DB 메모리 적재 등				
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	○ 공항에서 적용되던 정보화기기 자동심사 절차를 크루즈 전용으로 시스템 구축 ○ 기 운영되던 바이오 검색서버에 크루즈 전용으로 검색서버 증설 구축하여 하선자에 대한 바이오 규제자 검색 강화					

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	파일명	정보주체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1. 주요 업무흐름 설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2. 개인정보흐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영 향 평 가 기 준	평가기준 변경 사항 및 사유	구분	주요 내용			
		추가	-			
		제외	○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1.1.1 ~ 1.4.3, 10개 항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의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상기관에 대한 영향평가 ○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5.1.1 ~ 5.6.4, 30개 항목) - 평가대상 업무에서 특정 IT기술을 활용하지 않음			
	주요 평가 기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1.1 ~ 2.3.2)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3.1.1 ~ 3.5.3) - 수집, 보유, 이용·제공, 위탁, 파기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1.1 ~ 4.9.3)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 호				
평가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위 험 요 인 에 대 한 개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위험요소에 따른	○ 해당사항 없음				

선 조 치	정보주체 인지 사항	
평가 결과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평가한 결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등이 적정하게 이행 중이며, 별도의 침해요인이 도출되지 않음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 업무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보유기간 산정,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등이 적정하게 이행 중이며, 별도의 침해요인이 도출되지 않음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평가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중 일부 기술개발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하였음